

●울산전파관리소고시 제2024-2호

무선측위국 개설허가 고시

「전파법」 제21조(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) 제5항에 따라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측위국을 개설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(고시대상무선국) 및 제35조(무선국의 고시사항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07월 03일

울산전파관리소장

무선국(무선측위국) 개설허가

1. 허가연월일,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

허가(변경)연월일	허가번호	시설자의 명칭	비고
2024. 6. 28.	55-2024-26-0000002	현대측기 주식회사	개설허가

2. 무선국의 종별,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(호출명칭)

무선국의 종별	무선설비의 설치장소	호출부호(호출명칭)
무선측위국	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46-1	현대측기측위

3. 주파수, 전파의 형식,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

주파수	전파의 형식	점유주파수대역폭	안테나공급전력
457.1375 MHz	8K50F1D	8.5 kHz	1.6 W